

戶主制度의歷史와展望

발행 : 1980년

저자 田 鳳 德

(대한변호사협회 자문위원)

정부등록번호 : 제 13391호

1. 음력 1980년 10월 10일 발행 : 1980년

2. 戶主制度의 歷史 (1) 新羅時代 (2) 高麗時代 (3) 朝鮮時代

(1) 新羅時代 (2) 高麗時代 (3) 朝鮮時代

(1) 新羅時代 (2) 高麗時代 (3) 朝鮮時代

(1) 新羅時代 (2) 高麗時代 (3) 朝鮮時代

※ 이 논설은 대한변호사협회지 1982년 10월호

(통권81호)에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통권81호)에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1. 緒 論

戶主는 一家의 家長이며 家制成員인 家長으로서 一家를 支配하고 統御하는 자를 말한다.

一家는 一戶主이며 一戶主는 一家를 支配하고 統御하는 자를 말한다. 戶主는 一家의 家長이며 家制成員인 家長으로서 一家를 支配하고 統御하는 자를 말한다.

戶主와 歷史는 家制度 내지 戶籍制度와 關聯되어 있다. 戶主는 一家의 家長이며 家制成員인 家長으로서 一家를 支配하고 統御하는 자를 말한다.

戶主는 一家의 家長이며 家制成員인 家長으로서 一家를 支配하고 統御하는 자를 말한다.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전화 794-4560

2. 戶主制度의 歷史

(1) 新羅時代

日本國 奈良에 있는 奈良時代의 遺物을 간직

전 봉 덕 박 사 약 력

- 1910 년 : 출 생
- 1940 년 :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졸업
- 1951 년 ~ 현재 : 변 호 사
- 1963 년 ~ 현재 : 법을 통한 세계평화회의 한국지부장
- 1968 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받음
- 1951 ~ 1961 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제사)
- 1969 년 : 서울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1970 년 ~ 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자문위원
- 1972 년 ~ 현재 : 한국법사학회 회장
- 1972 ~ 1976 년 : 한국법학원장
- 1973 ~ 1980 년 : 사학윤리위원장
- 1976 년 ~ 현재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장
- 1980 년 : 제 5 공화국 헌법개정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제 5 공화국 헌법시안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 論 說 ■

戶主制度의歷史와展望

辯協諮問委員 田 鳳 德

< 目 次 >

- | | |
|--------------|---------------------|
| 1. 緒 說 | (2) 家와 戶主 |
| 2. 戶主制度의 歷史 | (3) 姓 및 本貫과 戶主 |
| (1) 新羅時代 | (4) 戶主의 權利義務 |
| (2) 高麗時代 | 4. 戶主制度의 展望 |
| (3) 李朝時代 | (1) 戶主權의 成立 |
| 3. 現行法과 戶主制度 | (2) 新憲法과 戶主制度 |
| (1) 民法의 公布 | (3) 戶主制度는 廢止되어야 한다. |

1. 緒 論

戶主는 一家의 家長이며 家構成員인 家族을 통솔하고 支配하는 자를 말한다.

一家는 一戶主이고 戶主는 戶主相續으로 代대로 승계한다 一家의 戶主와 그 家籍에 속하는 家族狀況과 그 身分에 관한 사항을 記載하는 公文書의 戶籍과 不可分の 關係를 가진다 戶主의 歷史는 家制度 내지 戶籍制度의 歷史와 같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筆者에게 주어진 課題는 「戶主制度」인 바, 本 論稿에서는 우리나라 戶主制度의 沿革을 考察하고 現行戶主制度和 戶主制度의 將來의 展望을 論術하고자 하므로 自然家族制度和 戶籍制度도 같이 研究하게 될 것임을 附言한다.

古來로 우리나라에서는 戶籍에 관한 法律을 戶口法, 戶口之法 또는 戶籍法 등으로 불리왔고 戶口申告의 記載事項을 戶口式이라고 稱하

였다. 戶口用紙片에 申告者(戶主)가 戶口式에 따라 申告事項을 記入하여 두장(高麗) 또는 석장(朝鮮朝)씩을 만들어 官에 納付하면 官에서 受理 保管하고 또는 帳籍에 記入하고, 나머지 한장에는 成籍日字, 戶番 官府名을 記入하고 官印을 捺한 후에 官長이 書押하여 申告者에게 下付한다 下付된 文書를 戶口單子 또는 戶籍이라 稱한다

이러한 戶口單子에는 戶主 이하 同居하는 家構成員이 全員網羅되어 있는 바, 各家에 따라 그 戶口數는 다를 것이지만 同居人, 奴婢類까지 同居生活하는 者는 全員이 包含된 것이다.

戶籍의 歷史는 종래 高麗時代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日本國 奈良에서 발견된 新羅民政文書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戶籍制度는 新羅時代까지 소급된다.

2. 戶主制度의 歷史

(1) 新羅時代

日本國 奈良에 있는 奈良時代의 遺物을 간직